

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○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

3.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내용

○ 조정규모 및 조정내용

● 총 ⇒ 77필지 91,142.6㎡

구 분	필 수	면 적	조정내용
◆ 임은동 → 상모동 편입	15필지	55,842.3㎡	행정·법정동
◆ 임은동 → 상모동 편입	3필지	929.7㎡	법정동
◆ 임은동 → 사곡동 편입	7필지	4,598.5㎡	"
◆ 상모동 → 임은동 편입	5필지	5,525.5㎡	법정·행정동
◆ 사곡동 → 임은동 편입	8필지	2,942.8㎡	법정동
◆ 사곡동 → 상모동 편입	32필지	17,958.4㎡	법정동
◆ 상모동 → 사곡동 편입	7필지	3,345.4㎡	법정동

4. 조정사유

- 상모사곡, 임은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한 필지가 2개의 법정·행정동으로 분리되어 행정추진 및 주민불편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법정·행정동으로 분리됨으로 주민화합 및 행정효율성 저해

5. 법적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조3항(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)
-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한규칙 제11조(지방의회 의견서 첨부)

6. 검토의견

- 행정구역변경 사항중 동 경계지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입니다.
- 먼저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예관한규칙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 승인 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임.
- 상모 및 사곡구획정리지구 내 지역으로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및 법정동을 조정하고, 동일 필지에 대한 2개의 법정·행정동으로 분리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